

제주지방법원 2022. 8. 26 선고 2022가단5777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제주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8. 26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B 사이에 2021. 9. 30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B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1. 10. 1. 접수 제51240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송현경